

[서식7-1]

수의계약 사유서

계 약 명		평택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폐기물(혼합폐기물 외 3종) 처리 용역	
소요예산		금10,937,000원(금일천구십삼만칠천원정) / 부가세 포함	
계약상대자		주식회사 이한산업	
수의 계약 체결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법적근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합니다. Y/N ☐	
		세부 법적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사 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계약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연간 계약 횟수 초과	부서 기준 동일 계약상대자와 연 5회를 초과하는 수의계약에 해당합니다. Y/N ☐	
	사 유		
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검토 결과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Y/N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한사항] 공단 퇴직자 영입확인서 검토결과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Y/N ☐ ①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일 경우 ② 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와 수의계약 체결하려는 경우	
② 수의계약 체결 제한 예외 대상		※ "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가 N인 경우에만 체크 수의계약 법적근거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2. 공단 퇴직자 영입(채직)현황 확인서	

2026년 07월 22 일

담당 성명 박 인 구

부장 성명 김 주 한

부서장 성명 신 황 식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사유서를 제출합니다.